2023년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 선발기준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선발당시의 신체등급,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산 선발

□ 선발대상

○ **(일반선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나.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30일까지 규칙 제 85조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우선선발)**

가. 수형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병역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원인이 병역법인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

나. 자녀양육 * 신청 요함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다. 생계곤란 * 신청 요함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 선발순위

구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자녀 양육자, 수형 사유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	13순위
2급	**4순위**	**5순위**	**6순위**	11순위	14순위
1급	**7순위**	**8순위**	**9순위**	12순위	15순위

※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